



##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규정

규정번호	4-1-43
제정일자	2018.11.03.
개정일자	2024.8.19.
책임부서/팀·계	사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「사립학교법」, 「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」, 「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」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용어의 정리)** “기금”이라 함은 연구 장려, 건축비용 지급, 장학금 지급, 퇴직금 지급, 기타 대학발전 등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 단,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18., 2022. 04. 21., 2024.8.19.>

② 위원은 교원·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,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18.> <개정 2022. 04. 21.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 12. 18.>

④ <삭제 2019. 12. 18.>

⑤ <삭제 2019. 12. 18.>

**제6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.<개정 2021. 12. 23.>

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<전문개정 2019. 12. 18.>

**제7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회의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9조(서면결의)**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.

**제10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· 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비밀유지 의무)**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경비 등의 지급)**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사무관장)**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13조2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. <본조신설  
2019. 12. 18.>

**제14조(기타 사항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